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0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박성훈 · 이현승 · 김성원
박충권 · 김위상 · 서명옥
고동진 · 김기웅 · 박수영
이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2022년 제도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회사가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4항제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4항제1호 중 “수입배당금액”을 “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③ (생 략)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 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 다.	④ ----- ----- ----- -----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u>수입배당 금액</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수입배당금액	1. ----- ----- -----수입배 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 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 금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다)-----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